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1973.7.11, 73수3]

【판시사항】

정당원은 탈당신고서를 그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만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해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저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정당법(1972.12.30. 법률 제2403호) 부칙 제2항은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당법 제23조, 정당법 부칙

【전문】

【원 고】 박종길

【피 고】 경상북도 제9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원고 주장사실 중 원고가 1973.2.27.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973.2.10.자로 신민당 중앙당에 신민당원으로서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1973.2.14. 무소속으로서 경상북도 제9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던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민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는 신민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3.2.24.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 제30조에 의하여 의원후보등록무효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관계로 원고가 위 선거에 후보자로서 참여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당법(1970.12.20. 제2403호 개정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신민당 경상북도 울진, 영양지구당은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이전의 구선거법 당시 울진군과 영양군의 2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있을 때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위 울진군은 청송군과 영덕군의 3개군이 합쳐서 경상북도 제9선거구로서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고, 또위 영양군은 영양군대로 영주군과 봉화군이 합쳐서 제10선거구로서 또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으므로 종전의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던 위 울진, 영양 지구당은 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연 해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원고로서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지구당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그 존재하지 않는 지구당의 당원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법 부칙(1972.12.30. 법률 제2403호)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정당은 이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개편, 보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개편,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니 구 정당법상의 위 울진, 영양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구당이 당연 해체되거나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정당의 지구당에 있어서는 그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른바, 사고당부로 지목되어 지구당이 없는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인데, 위 울진, 영양 지구당은 1973.1.10.이전에 이미 지구당위원장 노영호가 탈당을 하였던 관계로 구 정당법에 의한 지구당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성되어 정당법상의 등록을 마친 정당의 지구당이 그를 대표할 위원장이 탈당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다 하여 그 지구당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박철용의 증언은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신민당 중앙당에서는 1973.2.10.자로 울진, 영양 지구당에 소외 황병우를 위원장서리로서 임명까지 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의 이유없음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 경상북도 제9선거구에서 원고와 같이 의원후보등록을 하였던 소외 신순휴도 원고와 같은 신민당원 이었고 또 원고와 같이 신민당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등록무효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선거에 참가케 하고 유독 원고에게만 무효통지를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신순휴가 당적을 보유한채 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은 증인 박철용의 증언은 단순한 추측적인 진술로서 그 증언만으로서 위 소외 신순휴가 당적을 보유한채 후보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73.2.14. 현재까지 적법하게 당적을 이탈하였다고 볼 다른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선거관리위 원회가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한 무효의 등록이라고 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의 결정을 한것은 적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대법관 양병호 대법관 김윤행